

2015. 2. 11(수)



보도자료

2015년 2월 11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엄열 과장(☎2110-1520)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임종철 주무관(☎2110-1526)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설명회 개최

- 개인정보·위치정보 정책방향 안내와 점검 실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월 27일(금) 10시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대동청사 14층 대강당)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분야에서는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14.11.29.시행),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15.8.4.시행), ③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15.1.1.시행), ④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제정('14.11.12.시행)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변화된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 사업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사전질의를 받은 후 안내하여 현장 중심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치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사업자는 2월 24일까지 이메일(padlim@kcc.go.kr(개인정보), jieunhwang@kcc.go.kr(위치정보))을 통해 질의를 제출하면 설명회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다.

< 1. 위치정보 관련 신고·허가 절차 및 개정 위치정보법 안내 >

위치정보 기반의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쉽게 위치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지난 2월 개정되어 8월 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위치정보법의 주요내용*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위치정보와 관련된 사업자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진입규제 완화, 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매회 즉시 통보 의무 완화 등

< 2.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안내 >

방통위는 작년 12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면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15.1.1.시행)을 마련한 바 있다. 설명회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를 위하여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현장 중심의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 3.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및 개정 정보통신망법 안내 >

방통위는 작년 11월,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강제하거나 무분별하게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가 주로 궁금해 하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폐지, 동의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현방안 등을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 단계별 개인정보 파기 기준,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을 제시

더불어, 작년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1년 동안 이용자의 이용 기록이 없는 개인정보는 파기(또는 별도 보관)해야 하는 유효기간제(15.8.18.시행), 취급위탁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 확대·과징금 상향·법정손해배상제 도입 등(14.11.29.시행)과 관련한 내용도 안내할 예정이다.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위치정보 사업자에 대한 종합 설명회를 통해 사업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방통위는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4월부터 관련 협회와 함께 이행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후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 처분 등 조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첨부
1.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설명회 계획
 2. 위치정보법 주요 개정사항
 3.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4.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5. 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사항. 끝.

[붙임1]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설명회

- ◇ (목적) 온라인 개인정보·위치정보 정책방향을 사업자 질문 중심으로 안내하고 사업현장에서의 적용을 지원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15. 2. 27(금) 10:00~17:00, KISA 대동청사(14층 강당)
- (주최/주관) 방송통신위원회(KCC)/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참석 대상) 이통사·포털 등 사업자, 위치정보 사업자 등 200여명

□ 프로그램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 ~ 12:00 (120분)	① 위치정보 사업 신고 및 개정 「위치정보법」 주요내용 설명	방통위 OPA
13:00 ~ 14:40 (100분)	②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Q&A	방통위 KISA
15:00~16:40 (100분)	③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및 개정 「정보통신망법」 Q&A	방통위 KISA
16:40~17:00 (20분)	④ 자유질의 및 점검 안내	방통위 KISA

위치정보법 주요 개정사항

(‘15.2.3 개정, ‘15.8.4. 시행)

① 위치정보 사업 진입규제 완화(안 제9조제1항)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에 대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예 : 버스 도착시각 안내 서비스 등)
 - 다만, 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직무상 알게 된 위치 정보 누설 금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최소한의 관리·감독 유지
-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에 있어, 既 규정된 심사기준에 미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② 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매회 즉시 통보 완화(안 제19조제4항 신설)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모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③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해 가족관계 확인 간소화(안 제30조의2 신설)

-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신고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간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에 개인위치정보 공유를 명시적으로 금지 및 공유 내역에 대해 국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제재 부과

[붙임3]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① 수집 시부터 개인식별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식별화 조치(제3조·제4조·제5조·제10조)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 수집·저장·조합·분석 및 제3자 제공 등 가능

②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 등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제4조·제5조·제9조)

-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비식별화 조치 후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수집 출처 및 정보 활용 거부권 행사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 (개인정보 취급방침) 비식별화 조치 후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 등을 이용자 등에게 공개하고 '정보 활용 거부 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

· (수집 출처 고지) 이용자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 시 '수집 출처·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권'을 이용자에게 고지

③ 개인정보 재식별시, 즉시 파기 및 비식별화 조치(제3조·제6조)

- 빅데이터 처리 과정 및 생성정보에 개인정보가 재식별 될 경우, 즉시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토록 함

④ 민감정보 및 통신비밀의 수집·이용·분석 등 처리 금지(제7조·제8조)

- 특정 개인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의 생성을 목적으로 정보의 수집·이용·저장·조합·분석 등 처리 금지
-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통신 내용의 수집·이용·저장·조합·분석 등 처리 금지

⑤ 수집된 정보의 저장·관리 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시행(제3조제2항)

-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진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적용

※ (보호조치)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 설치, 접속 기록에 대한 위·변조 방지 조치,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등 악성프로그램에 의한 침해 방지 조치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기본 방향 >

- ◇ 사업자의 개인정보 최소 수집·보관 문화 정착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단계별 수집·파기·동의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
- ◇ 이용자가 사업자로부터 동의내용을 명확하게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뢰에 기반한 개인정보 이용 관행 유도

1]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정보통신망법 제23조제3항 관련)

-
- ▶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가 아님에도 필수적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 필요한 시점이 아님에도 회원가입 시 “미리” 동의를 받아 수집
 - ▶ (예) 회원가입 시 홈페이지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처·결혼 여부 등을 수집 동의 요구하거나 배송지 주소를 미리 요구
-

○ 해당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필수동의 항목)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그 외 선택동의 항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예) 인터넷 회원제 서비스 : [필수동의 항목]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선택동의 항목] 마케팅 목적의 연락처, 결혼정보 등

○ 필요한 시점에 수집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 (예) 인터넷 쇼핑몰 : [회원가입 단계]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만 수집 → [결제·배송단계] 결제·배송정보 수집

○ 불필요하게 “이용자 본인확인”(휴대전화, 아이핀, 공인인증서, 기타)을 강제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함

※ (이용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① 법률 상 의무이행(나이, 본인, 실명확인 등), ② 서비스 특성 상 명의도용 등 이용자 피해 예방 등

○ 자동수집장치에 의해 수집·생성하는 개인정보(예: 쿠키), 이용내역 정보(예: 거래기록),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예: 요금액)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함

2 단계별 개인정보의 파기 기준(정보통신망법 제29조 관련)

- ▶ 개인정보 관리단계(수집-제공-파기)에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의 파기조치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업자는 파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관
- ▶ (예)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의 기준이 없어 사업자 판단이 곤란

- (수집·보관 단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을 명확히 하고, 파기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파기
 - 확인만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 경우*에는 저장을 제한하고, '영업점의 개인정보 보관 최소화 방안'을 내부관리계획(망법 제28조)에 반영
 - * 명의도용 방지 목적으로 신분증을 이용한 본인여부 확인 시에는,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장하지 않고 즉시 파기
 -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 분리하여 보관하고 내·외부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
- (제공 단계) 서비스와 무관한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확인 등 조치사항을 계약서에 반영
 - 취급위탁 계약서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파기 확인 사항을 명시한 후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 * 서비스 계약 이행 또는 이용자 혜택 부여와 관련이 있는 경우
- (파기 단계) 파기 사유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파기하되, 복구·재생할 수 없는 파기방법*을 적용

< 복구·재생할 수 없는 파기 방법(예시) >

- (개념) 사회 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
- (예시①) 하드 디스크 등 매체 전체 데이터 파기의 경우 여러 번 덮어쓰기(wiping) 방법 또는 천공, 소각, 강력한 전자기적 파기(Degaussing) 방법 등을 이용
- (예시②) 서비스 중인 DB의 일부 데이터를 파기하는 경우 임의의 값으로 덮어쓰기한 후 삭제하는 방법 등을 이용

③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정보통신망법 제26조의2 관련)

-
- ▶ 동의서 서식을 사업자 위주로 작성, 이용자가 읽지 않고 동의하도록 유도
 - ▶ (예) 불필요한 내용을 작은 글씨·장황한 서술 등으로 표현하여 읽기 어렵게 고지
-

○ “법정 고지사항”만을 간결하게 고지하고, “쉬운 용어”, “중요내용*은 빨간색, 굵은 글씨 등” 등을 활용하여 명확하게 표시

* 선택동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 중요 보유기간 등

○ 필수동의 항목과 그 외 선택동의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동의내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 동의서 서식 개선

- (인터넷 동의) 글자체와 글자크기는 이용 환경을 고려하여 선택* 하되, 이용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조합

* (예시) PC의 운영체제(OS)에서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글자체를 사용하고, 글자크기는 웹사이트 구현시 기본크기 이상으로 설정

- (서면 동의) 글자크기, 줄간격 등을 확대)하여 읽기 쉽게 개선

※ (예시) 항목구분 글자는 최소 12p, 본문글자 최소 10p, 줄간격 130% 이상

○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붉은색, 굵은 글씨 등’으로 표시

-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과 선택적인 사항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시) ① [필수] 필수동의 항목에 대한 수집·이용 동의→② [선택] 선택동의 항목에 대한 수집·이용 동의→③ [선택] 취급위탁 동의→④ [선택]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를 받을 때에는 “동의함”에 미리 표시할 수 없도록 함

※ 선택 결과를 주어지게 구성(default 설정)하지 않아야 함

[붙임5]

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사항

①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법 제23조제3항 신설)

-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는 규정 신설

② 개인정보 취급위탁시 동의 예외 요건 강화(법 제25조의제2항 개정)

-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시 동의 예외 요건으로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용자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

③ 개인정보 유출기업 처벌 강화(법 제64조의3제1항 개정)

- 개인정보 관련 위반 행위 시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1억원 →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상향 조정하여 사업자 책임 강화

④ 개인정보 관련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법 제32조의2 신설)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 이용자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

⑤ 개인정보 누출시 신고·통지 강화(법 제27조의3제1항 개정)

-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현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해서는 아니됨을 명시

⑥ 개인정보 사전 유출 방지 및 파기 조치 강화(법 제29조제1항 개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